

글로벌 통상·금융연구원 규정

시행: 2022. 03. 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원은 경희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부설 글로벌 통상·금융연구원(Kyung Hee Global Trade & Finance Research Institute, 이하 “본 연구원”이라 한다) 이라 한다.

제2조(소재지) 본 연구원은 본교 정경대학관 내에 둔다.

제3조(설립목적)

본 연구원은 국제화의 확산으로 인한 통상·금융 분야의 다양한 연구 수요에 대응하여 심층적 연구와 인력양성을 선도하고, 통상·금융분야의 글로벌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

본 연구원은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글로벌 통상·금융학 연구주제의 발굴
2. 통상·금융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국제지역연구 및 수출역량 연구 활성화
3. 통상·금융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위한 산업경쟁력 연구 활성화
4. 국경간 전자상거래 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관한 연구 활성화
5. 통상·금융 분야의 국제화를 위한 연구협력활동
6. 미래 통상·금융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 무역 연구인력 양성
7. 국제금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토대 마련

제2장 조직

제5조(기구)

본 연구원은 정경대학 무역학과와 국제통상·금융투자학부에서 운영을 주관하며, 연구활동과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
1. 운영위원회
2. 저널편집위원회

제6조(연구원장)

- ① 연구원장은 본 연구원을 대표하며 연구원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연구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원)

- ① 본 연구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위해 상임연구원, 전문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통상·금융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연구원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.

제8조(연구보조원)

- ① 본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학사과정 이상의 자격자를 연구보조원으로 둘 수 있다.
- 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행정요원)

- ① 본 연구원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 관리하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.
- ② 행정요원은 연구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 1. 연구 및 사업의 기획과 진행
 2. 연구원장, 팀장, 연구원의 임명 심의
 3. 예산 및 결산
 4. 연구원 관련 규정(내규 포함)의 제·개정 및 폐지
 5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장은 본교 무역학과 혹은 국제통상·금융투자학부의 전임교원 중 2인 이상과 본교 정경대학 행정실 정규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재정)

본 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교내연구비 및 정경대 발전기금
2. 대외연구비 수탁액 및 외부 기부금
3. 기타수입

제12조(회계 등)

① 본 연구원의 예산은 본교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독립된 예산계정으로 운영한다.

② 본 연구원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3조(보칙)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18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